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1976)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 번호 2018-55

1. 메이슨 캐피탈 엘.피. (MASON CAPITAL L.P.)
2.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10 호

중재판정부
Professor D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The Rt. Hon. Dame Elizabeth Gloster
Professor Pierre Mayer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2 년 3 월 9 일

동 절차 명령은 다음에 명시된 절차 문제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록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한 지시사항을 명시하는 바,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명한다:

1. 심리 장소 및 참석자

- 1.1 제 1.2 항 및 제 1.3 항에 따라 심리는 미국 620 8th Avenue, 34th Floor, New York, NY 10018 소재 뉴욕 국제중재센터(이하 “**NYIAC**”)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 1.2 중재인 The Rt. Hon. Dame Elizabeth Gloster 및 Professor Pierre Mayer 은 동 심리에 원격으로 참석한다.
- 1.3 심리 이전 또는 도중 기타 심리 참석자(들)의 원격 참석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 중재인의 원격 참석을 지원하고 심리의 일부를 원격 또는 혼합된 형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자 당사자들은 FTI 재판 서비스(이하 “**심리 운영진**”)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4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 항에 따라 중재지(법적 본거)는 싱가포르로 유지한다.
- 1.5 2022 년 3 월 7 일까지 각 당사자의 변호인은 심리에 참석 예정인 전 참석자의 목록을 중재판정부, 상대 당사자 및 상설중재재판소에 전달한다. 당사자가 동 날짜 이후에 참석자 목록의 보완 또는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설중재재판소와 상대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고지한다.

2. 심리 일정 및 시간

- 2.1 중재판정부는 매일 뉴욕 시간 기준 오전 8:30 부터 오후 3:30 까지 / 런던 시간 기준 오후 12:30 부터 오후 7:30 까지 / 중앙유럽표준시 기준 오후 1:30 부터 오후 8:30 까지, 점심시간 (45 분), 커피휴식시간 (15 분) 2 회 및 기타 중재판정부에서 허용하거나 희망하는 기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유연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심리는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변동사항을 전제로 **부속서 1**의 심리 일정에 따라 운영된다.
- 2.2 각 당사자에게는 해당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제시할 동량의 시간이 합리적인 유연성을 기반으로 부여된다.
- 2.3 중재판정부 보조원은 경과 및 잔여 시간을 공식 기록한다.
- 2.4 당사자가 해당 당사자의 증인에 대한 직접 또는 재주신문 (절차 명령 제 1 호 제 7.3 항에 따른 직접 신문을 대신하는 당사자의 전문가 프레젠테이션 포함) 및 상대 당사자 증인의 반대 신문에 소비한 시간은 해당 당사자의 주장 입증 제시 시간에 포함된다. 합리적인 유연성을 기반으로, 당사자들의 변론 또는 증인신문 도중 중재판정부의 질의 및 중재판정부에 대한 답변에 소요되는 시간은 동 당사자의 주장 입증 제시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대신 중재판정부의 심리 시간에 포함된다.
- 2.5 심리 일정에서 일일 심리시간 중 0.5 시간은 중재판정부의 발언, 관리운영사항, 당사자들의 신청 또는 중재판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기타 절차문제 및 당사자의 신청서 또는 중재판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기타 절차 문제를 위해 예비하며, 또한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모든 추가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 심리 중 상기에 소요된 시간은

양 당사자의 주장 입증 제시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6 당사자들은 시간 분배에 관한 모든 분쟁을 상호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동 분쟁이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동 분쟁을 해결한다.

3. 증인 및 전문가 신문

- 3.1 증인 신문 절차는 절차 명령 제 1 호 제 6.10 항 및 제 7.3 항에 명시한다.
- 3.2 절차 명령 제 1 호 제 6.12 항에 추가하여, 사실 증인은 심리 전에 (대면 또는 원격) 심리실에 입장할 수 없으며, 증언에 앞서 실시간 심리 중계에 참석하거나 속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신문 이후에 사실 증인은 심리의 전 부분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3.3 절차 명령 제 1 호 제 7.3 항에 따라, 양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증인은 심리실에 언제든지 참석 가능하다.
- 3.4 사실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중단되어 다음 심리 회기에서 이를 재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실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은 동 신문 종료 시까지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의 대화 또는 연락을 일체 금한다. 부속서 1 에 명시된 심리 일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사실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이 당일에 완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 3.5 반대 신문을 요청 받은 증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코로나-19 와 관련된 여행 제한과 같은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회에 직접 대면 참석해야 한다. 증인이 원격으로 증언해야 하는 경우 (원격 심리의 경우 또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및 그 증인이 **부속서 2** 의 원격 참석자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4. 심리 자료

- 4.1 당사자는 절차 명령 제 1 호 제 8.4 항에 따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및 시연용 증거물을 심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 4.2 절차 명령 제 1 호 제 8.4 항에 따라 시연용 증거물은 상대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고지될 필요 없다.
- 4.3 시연용 증거물 및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전자 사본은 모두진술 또는 종료진술 또는 각 증인 증언의 각 시작 시에 중재판정부 구성원, 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 중재판정부 보조원, 상대 당사자의 변호인, 법원 속기사 및 통역사에게 제공된다. 출력사본은 완전한 원격 심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 중재인, 중재판정부 보조원, 상대당사자(4 부), 법원 속기사 및 통역사(대면 참석으로 가정)에게도 출력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4.4 절차 명령 제 1 호 제 8.4 항에 따라 (신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 및 동 요청 관련 상대당사자의 의사표명 기회에 후속하여) 중재판정부가 승인한 경우가 아닌 한 심리에서 신규 문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당사자가 기록에 대한 신규 증거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문서를 동 요청에 첨부할 수 없다.

5. 심리 묶음

- 5.1 전자 심리 묶음은 심리 운영진이 관리하는 심리 플랫폼을 통해 당사자들과 재판소 및 신문 중인 증인이 접근 할 수 있는 기록상의 모든 문서로 구성된다.
- 5.2 중재판정부는 심리 종료 직후부터 1 년의 기간 동안 심리 운영진이 관리하는 심리 플랫폼의 전자 묶음에 대한 접근권한을 유지한다.
- 5.3 전자 심리 묶음 사본이 포함된 USB 저장장치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임명조건 제 4 항 및 제 9.2 항에 명시된 주소로 중재판정부 및 상설중재재판소의 각 구성원에게 발송된다.
- 5.4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물량산출 전문가에게 출력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 및 전문가에게 신문 중 참조된 문서의 출력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6. 최종진술, 심리 후 보고 및 비용제출

- 6.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당사자들이 2022 년 3 월 26 일 토요일에 구두 최종진술의 발표 여부를 심리에서 결정한다.
- 6.2 추가 서면 제출은 심리 종료 시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의거한다.
- 6.3 비용 명세서 제출일은 심리 종료 시 결정된다.

7. 음향 녹음 및 전사

- 7.1 당사자들은 동 심리에서 David Kasdan 이 법원 속기사로 활동함에 동의한다. 상설중재재판소는 Mr Kasdan 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7.2 절차 명령 제 1 호 제 8.2 항 및 제 8.3 항에 의거 상설중재재판소는 심리의 음향녹음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들이 동 녹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설중재재판소는 LiveNote 또는 유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시간 속기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사를 준비한다. 각 심리일 말미에 당사자들에게 (초안 또는 최종안 형태의) 당일 속기록이 제공된다. 당사자들은 2022 년 3 월 11 일까지 다음을 제출한다: (i) 심리실 내 필요한 실시간 연결의 수; 및 (ii) 각일 속기록의 전자우편 배포목록에 추가를 희망하는 모든 수신인의 세부정보.
- 7.3 당사자들은 심리 종료 직후 21 일 이내에 속기록에 대한 모든 수정 제안 (해당하는 경우 번역 포함)의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합의된 수정안은 법원 속기사가 속기록(이하 “수정 속기록”)에 입력한다. 당사자들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며 중재판정부가 채택한 모든 수정 사항은 법원속기사가 수정 속기록에 입력한다.

8. 통역

- 8.1 상설중재재판소는 Professor Kim 및 Mr Cho 의 증언이 한국어에서 영어로, 또한 동 증인들에게 제시되는 모든 질문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순차 통역되도록 조치한다.
- 8.2 임명조건 제 8.9 항에 의거 당사자들은 한국어로의 통역을 생략하는데 동의한다.

9. 투명성

- 9.1 절차 명령 제 1 호 제 9.3 항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는 NYIAC 내 공개 시청실을 준비한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공개 시청실에서 심리 내용이 지연 방송되도록 조치하고, (절차 명령 제 1 호 제 9.4 항에서 정의하는) 보호정보로 지정된 일체의 정보가 논의되는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에 한 쪽 당사자가 주 심리실 내 진행에 차질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요청하는 경우 방송을 중단한다.
- 9.2 심리 후 상설중재재판소는 심리 속기록을 상설중재재판소 누리집에 게시한다. 속기록 게재에 앞서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동 속기록을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보호정보의 수정을 제안 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들은 해당 정보가 심리에서 보호정보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정보의 수정을 제안 할 수 있다.

10. 코로나-19 관련 지침

- 10.1 심리 참석자들은 부속서 3의 코로나-19 프로토콜을 준수한다.
- 10.2 상기 제 1.3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 또는 기타 참작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대면 참석이 불가능한 심리 참석자가 심리 운영진의 심리 플랫폼을 통해 원격 참석 가능하도록 심리 운영진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중재지: 싱가포르

(서명)

Professor D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

부속서 1 - 심리 일정 [뉴욕 시간 기준]¹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모두발언 및 기타 관리운영사항 (중재판정부)	08:30 - 08:45
모두변론 (청구인)	08:45 - 10:15
휴식시간	10:15 - 10:30
모두변론 (청구인)	10:30 - 11:45
점심시간	11:45 - 12:30
모두변론 (피청구국)	12:30 - 14:00
휴식시간	14:00 - 14:15
모두변론 (피청구국)	14:15 - 15:30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Mr Ken Garschina 신문	08:30 - 10:00
휴식시간	10:00 - 10:15
Mr Ken Garschina 신문	10:15 - 11:15
점심시간	11:15 - 12:00
Professor Kim 신문	12:00 - 13:30
휴식시간	13:30 - 13:45
Professor Kim 신문	13:45 - 15:15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Mr Young-gil Cho ² 신문	08:30 - 10:30
휴식시간	10:30 - 10:45
Mr Young-gil Cho 신문	10:45 - 12:45
[전문가 증거 개시 전 휴식시간]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Dr Duarte-Silva 프레젠테이션	8:30 - 10:15
Dr Duarte-Silva 신문	
휴식시간	10:15 - 10:30

¹ 청문회 일정에 명시된 시간은 반드시 참고용이며 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일과 중 중재판정부가 증인 또는 변호인에게 질문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일일 일정이 연장될 수 있다.

² 2022년 2월 23일, 피청구국은 Mr Cho가 2022년 3월 21일 예정된 한국 내 중요한 일정을 사유로 2022년 3월 24일 목요일(이후 2022년 3월 23일 수요일로 조정)까지 대면 심리 참석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제안된 일정은 남은 절차에 차질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Mr Cho의 일정을 수용하도록 시도한다.

Dr. Duarte-Silva 신문	10:30 - 12:00
점심시간	12:00 - 12:45
Professor Dow 프레젠테이션 Professor Dow 신문	12:45 - 14:30
휴식시간	14:30 - 14:45
Professor Dow 신문	14:45 - 16:15
2022년 3월 25일 금요일³	
Professor Wolfenzon 프레젠테이션 Professor Wolfenzon 신문	8:30 - 10:00
휴식시간	10:00 - 10:15
Professor Wolfenzon 신문	10:15 - 11:45
점심시간	11:45 - 12:30
Professor Bae 프레젠테이션 Professor Bae 신문	12:30 - 14:00
휴식시간	14:00 - 14:15
Professor Bae 신문	14:15 - 15:45
휴식시간	15:45 - 16:00
종료발언 (중재판정부)	16:00 - 16:15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최종변론을 위해 예비함]	

³ 청구인들은 제한된 증거 범위를 감안할 때 Professor Wolfenzon 과 Professor Bae 에게 할당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지 않으나, 이를 기반으로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한다.

부속서 2 - 원격 참석자 프로토콜

원격 참석자 준비사항

- 1.1 당사자들은 각 원격 심리 참석자가 해당 참석자의 장비 (예: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웹캠, 헤드폰, 인터넷 용량)와 심리 운영진의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 1.2 당사자들은 각 원격 심리 참가자가 위치한 원격 장소에 끊임 없는 심리 플랫폼 사용을 지원하는 적절한 인터넷 대역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대역폭 문제 또는 기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동 프로토콜을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상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 1.3 원격 참석자는 반드시 조명이 잘 비추는 중간색의 산만하지 않은 배경을 바탕으로 (가능한 경우) 참석자의 머리와 어깨만 보이도록 카메라를 배치해야 한다. (사실 증인 및 전문가 증인 포함) 발언하는 원격 참석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 또는 그들이 증언하는 원격장소의 녹음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가상 배경", 필터를 사용할 수 없다. 참가자 뒤의 밝은 창에서 비추는 빛 등의 역광은 가시성을 상당히 감소시키므로 피해야 한다. 참가자는 실질적인 배경 잡음이 없는 장소에서 참석하도록 노력한다.

절차적 보호

- 1.4 당사자들은 심리 시작 시 심리에 참석하는 각 원격 참석자를 발표하고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 1.5 당사자들과 심리 운영진은 원격 증인이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이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심리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6 원격 증인(전문가 증인 포함)은 증인이 증언을 제공하거나 절차를 보거나 듣는 장소에 증인 이외의 타인이 없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동 증인(또는 전문가 증인)은 해당인의 입회, 입회 사유 및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 1.7 원격 증인은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휴식 시간 포함) 증인의 증언 주제에 관해, 어떤 수단으로든, 누구와도 의사 소통할 수 없다.
- 1.8 원격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동 증인은 (의무는 아니지만) 증인의 진술 또는 전문가 보고서의 표시되지 않은 출력사본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증언하는 동안 그 공간 내의 어떠한 문서 (모든 종류의 전자 또는 출력사본)도 소지할 수 없다. 원격 증인의 증언 중에 신문하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 자료 또는 원격 증인 본인의 서면 진술 또는 전문가 보고서 이외의 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동 증인은 해당 문서를 식별해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동 문서의 전시를 요청할 수 있다.
- 1.9 각 원격 증인은 증거를 제공하는 동안 휴대 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원격 증인은 증언 이전에 그리고 증언 과정에서 연결이 실패하는 경우 그들과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심리 운영진에게 본인의 상세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연결에 실패하는 경우에 원격 증인은 심리 운영진에 의한 동 증인과의 통신을 복구를 위해 휴대 전화를 켜는 것이 허용된다.
- 1.10 중재판정부는 원격 증인의 장비의 적합성 및 원격 증인의 장비 친숙도 관련 원격

증인에게 이를 문의한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모든 참석자에게 (a) 원격 증인의 주변 환경 및 (b) 원격 증인이 증언할 장소의 책상 또는 탁자 위의 물품을 확인하고자 원격 증인에게 웹캠을 이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11 심리 동안 당사자의 대표가 증거 문서, 시연용 증거물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하는 경우 심리 운영진은 해당 문서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화면 공유 또는 문서 표시 방식을 통해 원격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부속서 3 - 코로나-19 프로토콜

1.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검사

- 1.1 심리 초일, NYIAC 에 대면 참석하는 모든 심리 참석자는 상설중재재판소가 요구하는 다음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 (a) 유럽의약청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또는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sation)가 긴급사용목록을 통해 승인한 예방접종과정을 통한 완전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 (b) 참석자가 심리에 최초 등장하기 전 최대 72 시간 이내에 실시한 음성 PCR 검사 결과.
- 1.2 심리 참석자는 코로나-19 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심리에 직접 참석할 수 없다. 대면 참석하는 모든 심리 참석자에게는 각 심리일 아침, 당일 회기 시작에 앞서 본인에게 일체의 코로나-19 증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대리인은 각각의 청구인 및 피청구국 전체 대표단을 대신하여 상기 확인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심리실 에티켓

- 2.1 동일 대표단의 참석자를 제외하고 각 참석자는 NYIAC 에 참석하는 동안 타 참석자와 최소 1.5 미터의 거리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2.2 심리실 또는 기타 공동공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참가자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 건강확인서

- 3.1 모든 심리 참석자는 심리일마다 뉴욕법이 요구하는 모든 건강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